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9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8.

발 의 자:김민기·강병원·김병주

김영호 • 변재일 • 송기헌

이규민 · 이탄희 · 조승래

주철현 · 홍성국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음.

그런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,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,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,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 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 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(안 제77조의6 신설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7조의6(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)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
 - 2.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
 - 3. 각 신체등급 파정자 수
 - 4.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
 -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

다.

- 1.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의무 이행 현황
- 2.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
- 3.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, 대체역으로 병역처분된 자의 수 및 병역면제자 수
-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계 작성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-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병역

 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

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

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
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

 역의무 이행 현황
- 2.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
- 3.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, 대체 역으로 병역처분된 자의 수 및 병역면제자 수
- ⑤
 제1항
 및
 제2항의
 통계
 작

 성
 및
 공개
 절차
 등에
 관하여

 필요한
 사항은
 대통령령으로

 정한다.